

제279회대구광역시의회(정례회)

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차(부록)

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

【검토보고서】

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과정

- 발 의 자 : 홍인표 의원, 강성환 의원, 김지만 의원, 김태원 의원, 박갑상 의원, 배지숙 의원, 안경은 의원, 이진련 의원, 임태상 의원
- 발의일자 : 2020년 11월 19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0일

2. 주요내용

- “아동빈곤”, “빈곤아동” 등의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복지·교육·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5조)
-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-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를 규정(안 제7조)

3. 검토의견

□ 제정취지

- 본 조례안은 부모의 이혼, 별거, 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 해체로 빈곤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를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적법성 여부
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상위 법령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이 없음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아동빈곤”, “빈곤아동” 등의 용어를 규정하고,
- 안 제3조는 복지·교육·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책 수립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,
- 안 제5조는 빈곤아동의 복지·교육·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음.

- **안 제6조**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연구,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**안 제7조**는 빈곤아동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되,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[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]

| 번호 | 제목 | 주요 내용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제1조 | 목적 | 빈곤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|
| 제2조 | 정의 | “아동”, “아동빈곤”, “빈곤아동” 등 용어 정의 |
| 제3조 | 책무 |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규정 |
| 제4조 | 법령 등과의 관계 |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본 조례에 따름 |
| 제5조 |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|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 |
| 제6조 | 사업추진 등 |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|
| 제7조 |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|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|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빈곤아동이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최근 부모의 가출, 이혼, 별거 등으로 해체되는 가족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, 사회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·문화적 소외 등으로 빈곤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,

< 가출 경험 >



※ 자료 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「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」

<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[단위 : 천건,%,건] >

|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총이혼건수(천건) | 116.9 | 114.3 | 114.3 | 115.3 | 115.5 | 109.2 | 107.3 | 106 | 108.7 | 110.8 |
| 증감건수(천건) | -7.1 | -2.6 | 0 | 1 | 0.2 | -6.4 | -1.8 | -1.3 | 2.7 | 2.1 |
| 증감율(%) | -5.8 | -2.2 | 0 | 0.9 | 0.2 | -5.5 | -1.7 | -1.2 | 2.5 | 2 |
| 조이혼율 (인구 1천명당 건) | 2.3 | 2.3 | 2.3 | 2.3 | 2.3 | 2.1 | 2.1 | 2.1 | 2.1 | 2.2 |

※ 출처 : 통계청 「2019년 혼인.이혼통계」 (2020.3.19.)

- 대구시의 경우 빈곤아동이 '20년 9월 기준 35,849명으로 18세 미만 전체 아동의 10.1%에 이르는 실정으로, 빈곤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 - ※ 대구시 빈곤아동 현황 [참고자료2]
-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예산에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,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1,828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.
 - ※ 대구시 아동빈곤 예방 지원 시책 현황 [참고자료1]
- 다만, 한부모 가정이나 결손 가정의 아동 등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으며,
- 빈곤아동들이 교육·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.
- 또한 기존에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, 아동빈곤 예방 정책결정에 대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음.
- 이상으로 「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참고자료1 대구시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 시책 현황

(단위 : 억원)

| 사업명 | 대상자 (사업량) | 지원내용 | '20년 예산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|
| 계 | | 16개 사업 | 1,828 | |
|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| 결식우려아동 (14,450명) | 방학중 중식지원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지원 연중 조·석식지원 | 93 | |
|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(드림스타트) | 만12세 (초등학생) 이하 (2,400명) | 통합사례관리, 지역사회 자원연계, 문제해결 등 | 22 | 국비 80% |
| 결연기관 운영 | 저소득가정 아동 (2,000명) | 결연사업 인재양성지원사업 아동교육사업 등 | 2 | |
|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 |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 (256명) | 양육보조금, 피복비, 심성관리비, 간식비, 예능교육비, 수학여행비, 대학입학금 등 | 8 | |
| 입양아동 가족지원 | 입양아동 및 가족 (439명) | 입양비용, 양육수당, 양육보조금 등 지원 | 9 | 국비 70% |
|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| 보호대상아동, 기초수급가구 아동 (5,750명) | 아동(부모 또는 후원자)이 적립 시 정부가 월 5만원 내에서 1:1 매칭 지원 (만18세 미만까지) | 25 | 국비 70% |
| 아동생활시설 운영 | 보호대상아동 (763명) |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양육 | 210 | |
|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| 가정위탁아동 (252명) | 위탁가정 발굴, 상담, 부모교육, 사후관리 등 | 4 | |
|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| 보호 종료아동 (95명) | 1인 500만원 지급 | 5 | |
|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| 시설 생활아동 (44명) | 검사비, 심리치료비 등 1인 208만원 | 0.7 | 국비 70% |
|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| 보호 종료아동 (319명) | 1인 월30만원, 최대3년간 | 11 | 국비 80% |
|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| 시설 퇴소아동 (25명) | 2년간 오피스텔 입주, 32실(생활실 25, 체험실 4, 사례관리실 3) | 3 | |
| 지역아동센터 운영(200개소) | 저소득 아동 (5,273명) | 방과후 돌봄, 급식 지원, 학습지도 등 | 136 | 국비 50% |
| 아동수당 지급 | 만7세 미만 아동 (116천명) | 월 10만원 지급 | 1,277 | 국비 80% |
| 방과후 아카데미 | 저소득 청소년 (640명) |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, 급식 지원, 학습지도 등 | 21 | 국비 50% |
|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,부교재비 지원 |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(1,400명) |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, 초·중·고 부교재비(연5만원) *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| 1.6 | |

참고자료2 대구시 빈곤아동 현황

빈곤아동 현황

(단위:명)

| 구 분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.9월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계 | 44,570 | 39,205 | 36,249 | 34,817 | 35,849 |
| 기초수급 | 23,275 | 19,569 | 17,730 | 16,798 | 17,656 |
| 차 상 위 | 21,295 | 19,636 | 18,519 | 18,019 | 18,193 |

※ '20.9월 차상위계층 : 한부모가족 10,482명, 차상위본인부담경감 7,108명, 차상위장애 256명, 차상위계층확인 347명

보호대상아동 현황

(단위:명)

| 구 분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.9월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계 | 1,137 | 1,117 | 1,061 | 1,042 | 1,015 |
| 시설보호 | 839 | 832 | 801 | 788 | 763 |
| 가정위탁 | 298 | 285 | 260 | 254 | 252 |

※ 보호대상아동 :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·지원함

빈곤아동 비율

(단위:명)

| 구 분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.9월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아동 (인구 대비) | 414,010 (16.7%) | 399,139 (16.1%) | 381,331 (15.5%) | 366,094 (15.0%) | 355,950 (14.7%) |
| 빈곤아동 (아동 대비) | 44,570 (10.7%) | 39,205 (9.8%) | 36,249 (9.5%) | 34,817 (9.5%) | 35,849 (10.1%) |

※ 빈곤아동 비율은 8% 추정(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 중복책정자 제외 시)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참고자료3 |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
■ 시·도

| 구 분 | 조례명 | 제정일 |
|-----|---|------------|
| 서울 |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2013.10.4. |
| 부산 |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| 2013.2.20. |
| 대전 |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| 2014.3.7. |
| 경기 |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(2013.8.5. 폐지,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통합) | 2012.4.6. |

■ 시·군·구

| 구 분 | 조례명 | 제정일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경기 수원시 |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2020.7.10 |
| 전북 전주시 |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2020.10.8. |